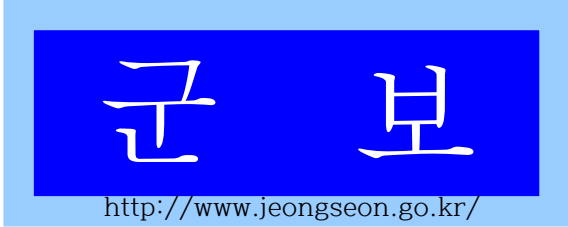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53호 2024. 2. 21.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4-17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88호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
- 정선군 공고 제2024-189호 『정선군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4-201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7
- 정선군 공고 제2024-206호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25

- 정선군 공고 제2024-208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

- 정선군 공고 제2024-209호 정선군 2019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3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4-17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평1지구, 광덕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정 선 군 수

-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유평1지구, 광덕1·2지구
- 3. 사업위치 및 면적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위 치	비 고
유평1지구	266 / 648,256㎡	정선군 남면 유평리 481-9 일원 (소마평 일원)	
광덕1지구	272 / 657,556㎡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3-4 일원 (광덕2리 마을회관 일원)	
광덕2지구	264 / 613,738㎡	정선군 남면 광덕리 974 일원 (광덕1리 마을회관 일원)	
합 계	802 / 1,919,550㎡		

-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 5.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560-2566, 2265)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188호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정선군 농어촌민박 운영현황

읍·면 계	정선읍	사북읍	고한읍	신동읍	화암면	임계면	북평면	여량면	남면
294	49	23	42	17	21	29	32	46	35

2. 주요내용

- 정선군 농어촌민박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안 제2조 ~ 제4조)
 -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지원대상자 정의
-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안 제5조)
-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안 제6조)
- 정선군 농어촌민박 보고·검토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2. 15. ~ 2024. 3. 6.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참조: 정선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 연락처 : 전화(033-560-2067), 팩스(033-562-2599)
- 주 소 : (26103)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농업기술센터 2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선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검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농업정책과장 이 경 덕

정선군 공고 제2024-189호

『정선군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정선군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별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 1. 모집기간 : 2024. 2. 15.(목) ~ 2024. 2. 22.(목)
- 2.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 3. 모집분야
 - 도시재생·도시계획 분야
 - 건축·조경·디자인·경관 분야
 - 관광·문화·사회·경제 분야
 - ※ 신청서(전문분야 항목)에 위 모집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정선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33-560-2466)
 - 접수기한 : 2024. 2. 22.(목) 17:00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 팩스 접수 불가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 이메일 : icarlos@korea.kr
 -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 이메일 송부 시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서식 제1호]
 - 보안각서 ----- [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3호]
- 자격증명서류 1부
 -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1부

5. 평가위원의 자격조건

- 자격조건 : 평가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3년 이상 관련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으로 해당 분야 경력 보유자
 -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⑤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 ⑥ 농업·농촌·농산물유통 심의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 ⑦ 그 밖에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예비 평가위원 선정 및 제척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①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②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많은 자
 - ③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연장자 우선
- 제외대상
 - ①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④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확인검증을 위해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
- 평가위원의 회피사유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 자격요건, 제외 및 회피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7.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 7명(예비위원 3명 별도)
-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로 번호 추천

-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① 다빈도순 ② 고령자
- 결과통보 : 선정 위원에 한하여 2024. 3. 6.(수) 개별 통보
- 위원장은 평가일 위원 중에서 호선

8. 제안서 평가 일시

- 일 시 : 2024. 3. 11.(월) 14:00
- 장 소 : 정선군청 소회의실
-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변경 시 별도 통보
- 평가내용 : 제안사별 제안발표, 질의응답, 평가위원 개별평가

9.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임명된 것으로 하며, 평가가
끝난 후 위촉·임명 해제된 것으로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
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안서 평가일에 참석이 가능
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평가위원 대상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에게는 정선군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모집분야)	
직 장	직 장 명			직 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정선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작성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인적사항 ~ 3.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렬까지 기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 · 협회 등은 임원, 1급, 2급, 3급으로 기재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4.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 ▶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7. 주요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만 기재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가능

[서식2]

보 안 각 서

본인은 『정선군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 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2.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4.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 성실성, 청렴성, 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소속(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정선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관리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후보자 지원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십니까?

예 아니요

본인은 「정선군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에 앞서 상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인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4-201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정선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안 제14조)
 -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기존)
 -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변경)
- 조례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 ‘사업자’ 정의 변경
- 보조금 용어 삭제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보조금(기존) → 지원금(변경)
- 제4조 변경(안 제4조)
 - 보조금 재원 등(기존) →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변경)
- 별지 제1호, 제2호, 제호, 서식 추가(안 제11조)
- 제11조 4항 삭제
- 제15조(준용) 삭제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2. 19. ~ 2024. 3. 11.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참조: 정선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33),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03)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신관 3층 전략산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를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로 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업자”란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정선군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을 “지원금” 으로, “다른 법령이나” 를 “다른”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재원 등)” 을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을 “지원금”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조금” 을 각각 “지원금”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조금” 을 “지원금”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을 “(지원금의 교부신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금을” 을 “지원금을” 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을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로, “보조금액, 보조금” 을 “지원금액, 지원금” 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을 “지원금의 교부를” 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 를 “지원금의 교부 신청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제..

제12조 중 “보조금” 을 “지원금”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을 “지원금을” 로, “보조금의 교부” 를 “지원금의 교부” 로, “보조금의 전부” 를 “지원금의 전부”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금” 을 “지원금” 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 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9.12.10] [[시행일 2020.3.1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

8-5 기타 보상금(301-12)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등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황 승 훈

정선군 공고 제2024-206호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설계 및 제작·설치기간 포함)
- 사업내용 : 광산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조성
권양기 및 레일바이뮤지엄 야간 미디어아트 공간 조성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위원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2월 18:00까지(예정)
-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 모집분야 : 미디어콘텐츠(영상제작), 정보통신(ICT), 전시관 운영, 관광
※등록신청서 작성 시 전문분야 1개 반드시 표기
- 자격조건

-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이상의 경력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
을 한 사람
-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 국·공립 전시관·과학관·미술관에 근무중인 학예사 또는 관리 운영 담당자

□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2월 18:00까지(예정)
- 접수장소 : 정선군청
- 접수방법 : 이메일

(전자문서,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전자문서 : 정선군청 관광과
- 장 소 : 정선군청 1층 관광과
- E-Mail : ahnahn1663@korea.kr (☎ 033-560-2145)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 전자문서 접수 시 비공개(6호)로 발송

※ 서류상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능하오니(별도 통보없음), 반드시 모집분야, 응모자격, 제출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서식 3】
- 자격증명서류(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일체

2. 평가위원 선정

- 통보일시 : 2024.2월(예정)
- 선정인원 : 평가위원 7명(예비후보 2명)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및 제안요청서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에 의거 선정

□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추첨 이후 유선 개별 연락
(연락 불능, 불참 시 예비후보 및 차순위 섭외)

3. 평가위원회 개최일정

□ 일 시 : 2024. 3월(예정)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평가위원 개별 통보

□ 장 소 : 정선군청 소회의실(예정)

□ 내 용 : 제안설명(업체별 PPT 설명, 질의응답) 및 평가

4.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내주신 자료는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선군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당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청 관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3-560-2145)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연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연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정선군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2】

평가위원 (보안)각서

성 명 :
주 소 :

본인은 정선군청 제안서평가위원회(예비)위원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며, 위원자격이 박탈되어도 이의 없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다 음

- 1. 본인은 정선군청 제안서평가위원회(예비)위원임을 대외에 알리지 않는다.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 전에 해당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에 회피한다.
 -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3. 본인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미리 배부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 4. 평가 중인 때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평가 후에도 심의과정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2024. . .

제안서평가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3】

개 인 정 보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경산시(미래전략과)
- 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정보 이용
-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일 까지
-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4.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4-208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폭염 특보기준 변경

- 기존 단순 기온만 고려한 특보발령 →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운영

2. 주요내용

폭염특보 발령 기준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안전과)
- 전 화: 033-560-2929
- 팩 스: 033-560-2174
- 이 메 일: eogusuu@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최고기온이”를 “최고 체감온도”로, “날이”를 “상태가”로, “예상되는”을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최고기온이”를 “최고 체감온도”로, “날이”를 “상태가”로, “예상되는”을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p> <p>가. 폭염주의보 : 일 <u>최고기온</u>이 33.0℃ 이상인 <u>날이</u>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u>예상</u>되는 경우</p> <p>나. 폭염경보 : 일 <u>최고기온</u>이 35.0℃ 이상인 <u>날이</u>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u>예상</u>되는 경우</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 <u>최고 체감온도</u> ----- <u>상태가</u> ----- <u>예상</u>될 때, <u>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u> 등으로 <u>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u>하는 ----- -</p> <p>나. ----- <u>최고 체감온도</u> ----- <u>상태가</u> ----- <u>예상</u>될 때, <u>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u> 등으로 <u>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u>하는 ----- -</p>

관계법령 발췌

□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4.17, 2022.7.5>

-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8.4.17>

- 1. 호우
- 2. 대설

- 3. 폭풍해일
- 4. 삭제 <2015.1.20>
- 5. 태풍
- 6. 강풍
- 7. 풍랑
- 8. 황사
- 9. 건조
- 10. 한파
- 11. 폭염
- 12. 삭제 <2018.4.17>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제2항 각 호의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세부 종류·내용, 대상 구역,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4.17.>

「예보업무규정」

제17조(특보기준)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의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8. 6. 1., 2020. 7. 30., 2023. 5. 11.>

특보의 발표기준(제17조 관련)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량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₁₀) 농도 800 μ 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1. 실효습도 :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
2. 천문조 :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4. 작성자

안전과장 전상근

정선군 공고 제2024-209호

정선군 2019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3호) 제23조에 따라 2019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정 선 군 수

1. 공 고 명: 2019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20. ~ 3. 6.(15일간)
3. 관련근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63호)
4. 대 상 자: 별도(붙임파일) 작성
5. 공고기간 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선군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 예정
6. 문의처: 정선군청 환경과(033-560-2345)